

■ 근로자수 증감에 따른 노무관리 체크사항

(2020.05.18.현재)

항 목		상시근로자수							비고 (관계법령 등)
		1~4	5~9	10~29	30~49	50~99	100~299	300~	
사회 보험	건강보험/국민연금 가입	○	○	○	○	○	○	○	건강보험법/국민연금법
	고용보험/산재보험 가입	○	○	○	○	○	○	○	고용보험법/산업재해보상보험법
	임금채권부담금	○	○	○	○	○	○	○	임금채권보장법
	두루누리 지원(고용, 연금)	○	○						국민연금법,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인사 노무 관리 일반	근로계약서 작성	○	○	○	○	○	○	○	근로기준법
	임금대장 작성	○	○	○	○	○	○	○	
	근로자명부 작성	○	○	○	○	○	○	○	
	해고예고(수당)	○	○	○	○	○	○	○	
	해고의 서면통지		○	○	○	○	○	○	
	해고의 정당한 이유 있을 것		○	○	○	○	○	○	
	재해보상의무	○	○	○	○	○	○	○	
	휴업수당		○	○	○	○	○	○	
	연차 및 생리휴가		○	○	○	○	○	○	
	연차휴가관리대장 작성		○	○	○	○	○	○	
	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			○	○	○	○	○	
	퇴직급여	○	○	○	○	○	○	○	근로기준법, 퇴직급여 보장법
	최저임금 적용	○	○	○	○	○	○	○	최저임금법
	성희롱예방교육	게시배포		○	○	○	○	○	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	장애인인식개선교육	게시배포				○	○	○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	건강진단	○	○	○	○	○	○	○	산업안전보건법
	노사협의회 설치 및 분기별 회의				○	○	○	○	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
	고충처리위원 선임				○	○	○	○	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,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	장애인 의무 고용					○	○	○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	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						○	○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산업 안전 보건	안전보건교육의무		○	○	○	○	○	○	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수와 업종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서, 근로자 수만 가지고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, 당 노무법인 또는 고용노동부 지방 관서 근로감독관과 통화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	안전관리자 선임								
	보건관리자 선임								
	안전관리책임자 선임								
	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								
	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								